

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3년 9월 29일

국무총리 고건
국무위원
보건복지부 김화중
장관

◎法律 第6981號

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

國民健康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회귀의약품센터

부칙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례)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회귀의약품센터가 실시하는 요양급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분부터 적용한다.

◇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약사법에 따라 회귀병환자들에게 회귀의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회귀의약품센터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

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위 한국회귀의약품센터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회귀병환자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, 한국회귀의약품센터에서 회귀의약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 한국회귀의약품센터를 포함시키려는 것임.

<법제처 세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약사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3년 9월 29일

국무총리 고건
국무위원
보건복지부 김화중
장관

◎法律 第6982號

藥事法中改正法律

藥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본문중 “醫療機關의 調劑室”을 “의료기관의 조제실(제72조의1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회귀의약품센터안에 설치된 조제실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72조의12제1항중 “공급”을 “공급(조제 및 투약업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72조의13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다만, 제2호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센터안에 조제실을 설치하고, 센터의 직원중 약사를 지정하여 사업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약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회귀병원환자들에 대하여 회귀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회귀의약품센터에 회귀의약품 등의 공급기능과 더불어 새로이 그 조제 및 투약기능을 부여하되, 한국회귀의약품센터 안에 조제실을 두고, 한국회귀의약품센터가 회귀의약품 등의 공급·조제 및 투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약사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. 〈법제처 제공〉

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3년 9월29일

국무총리 고 건
국무위원
보건복지부 김 화 중
장 관

◎法律 第6983號

國民健康增進法中改正法律

國民健康增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)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,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